

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

(의안번호 제59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1. 1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1. 1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1. 26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정목적

- 외국인투자촉진법(법률 제5559호, 98.11.17) 및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관한조례(99.1.14 조례2640호)등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 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
- 국내기업 중 군내투자기업에게도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여 국내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투자유치활동 및 민원사무 등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(안 제3조)
- 나. 군수는 매년도 마다 투자유치 목표,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수립 (안 제5조)
- 다.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도 마다 일정금액을 기금 으로 출연하여야 하며,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음. (안 제6조)

- 라.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.(안 제12조 내지 제19조)
- 마. 국내기업 및 도외 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.(안 제20조)
- 바.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비로서 부담하여야 하며, 군비부담액을 미리 예측, 이를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함.(안 제2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촉진법(법률 제5559호 98.11.17) 및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(99.1.14 조례2640호)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국내 기업 중 군내 투자 기업에게도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여 국내 기업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
- 국내기업 및 도외 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코져 함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유치기금은 얼마나 조성하며, 부담비율이나 기준은 정하여져 있는지
- 답 : 현재는 시달된 기준은 없으나 차후 도지사의 지시에 따를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